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34

발의년월일 : 2019년 9월 24일
발 의 자 : 정진철 의원 (1명)
찬 성 자 : 송도호, 정지권, 성중기, 우형찬, 이은주, 김태호, 추승우, 송아량, 오중석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서울시는 금년 8월부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서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임신기간과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최대 16개월 미만의 기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 그 이용에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따라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활성화하고 출산한 영유아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주차할 수 있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그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조항 신설 (안 제2조제2호)

나.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주차 금지 조항 신설 (안 제5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5조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5조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2. ---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 ② (생 략)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③ ---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